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수신 김우년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지연 신고)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최대 20% 이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1급~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추가 감경(최대 50% 이내)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3. 자진납부과태료고지서(감경)(별첨) 각 1부.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주무관 김광현 민원행정담당 대결 2017. 10. 30. 영종관리과장 전결
김장성

협조자

시행 영종관리과-15721 (2017. 10. 30.) 접수

우 2237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운서동) / <http://www.ifez.go.kr/>

전화번호 032-453-7714 팩스번호 032-440-8833 / citanaf@korea.kr / 비공개(6)

"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2017.10.30	
과태료 부과대상자 (매도인)	성명	김우년		주민등록번호	490429-*****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5* (을왕동)				
목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8				
	면적규모	토지(m ²)	-		건물(m ²)	**.*
	계약일자	2017.0*.*0				
신고내역	신고일자	2017.0*.*7				
	신고금액	**,000,000원				
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자연 신고	산출근거	○ 해태기간 3개월 초과 실제거래가격 1억원 미만 ○ 관련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과태료	금500,000원			

○ 귀하께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1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예정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통지서에 다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진납부를 원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된 고지서로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